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3월 25일

CUOMO 주지사, 주 유틸리티 회사들의 책임성 및 감독을 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위원회 개혁을 발표

유틸리티 회사들이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Moreland 위원회 권고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 수립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주요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 회사들이 책임 지고 규제기관과 고객에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2013-14 예산에 의해 구현된 공공서비스위원회(PSC)의 감독 및 집행 메커니즘을 강화할 개혁을 발표하였습니다. 구현된 개혁은 수퍼폭풍 Sandy 후에 주지사에 의해 설립된 Moreland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PSC의 집행 및 감독을 개선하고 유틸리티 회사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에 의해 구현된 개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PSC는 이제 주 법규 또는 PSC 명령의 위반에 대해 더욱 엄격한 민사상 벌칙금을 회수할 수 있고 벌칙금 사건을 법원에 가져갈 필요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 **적극적 감시:** PSC는 이제 유틸리티 계획 및 수행을 더욱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비상 대비 개선:** 구현된 개혁은 유틸리티 회사들이 더욱 견실한 비상 대비 계획 및 감독을 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 **더욱 강력한 책임성:** PSC는 이제 유틸리티 회사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시 면허를 취소하고 유틸리티 회사가 자산을 처분하도록 요구하는 등 어떤 조치든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풍 후에 뉴욕주는 Moreland 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유틸리티 회사들의 단점을 조사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위원회는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최고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개혁과 새 아이디어를 권고하였습니다. Sandy가 파괴와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후 5개월도 안 되어 우리는 Moreland 위원회가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비난한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진짜 이빨과 강제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주의 유틸리티 회사들이 그들이 섬기는 고객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Korean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이전에는 미국 전역의 많은 유틸리티 규제기관과 달리 PSC는 "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처벌을 추구할 것이 요구되어, 기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유틸리티 회사를 상대로 처벌을 추구해도 처벌이 드물었습니다. 개혁은 공공서비스법, PSC 명령 및 규제를 위반한 각 유틸리티 회사를 상대로 "합리성" 기준에 의거 행정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PSC에 제공합니다. 가능한 벌칙금의 규모는 세금을 뺀 유틸리티 회사 수익의 백분율에 근거하였으며 요금 납부자들에게 전가되지 않고 주주 자본에서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 및 감독 권능 강화: 개혁은 PSC가 유틸리티 회사의 조업 및 경영을 정기적으로 감사할 권한을 부여하며 그러한 감사의 소견에 근거하여 PSC가 유틸리티 회사에 추가적이고 더욱 엄격한 서비스 조건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PSC는 유틸리티 회사가 그의 서비스 구역에서 계속 서비스 제공자가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될 것입니다.

상세한 비상대비 계획: 이제 유틸리티 회사들은 더욱 강력한 통신 요건을 포함하여 상세한 비상대비 계획을 매년 PSC에 제출하여 검토와 승인을 받을 것이 요구될 것이며, PSC는 계획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비상의 경우 PSC는 요금 납부자들로부터의 비용 회복을 불허하고 계획 미준수에 대한 처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업 면허 취소: 본 법률은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 실패를 증명하는 반복 위반 소견에 근거하여 뉴욕주에서 조업할 수 있는 유틸리티 회사의 면허를 취소 또는 수정할 명시적 권한을 PSC에 제공합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회사 위반을 신고한 직원을 상대로 한 보복적 인사 조치를 유틸리티 회사가 취하는 것을 공공서비스법 위반으로 하는 새 조항이 본 법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EO 인증: CEO들은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요건을 포함하여 모든 해당 주 법규, 규제, 명령 및 절차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유틸리티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매년 PSC에 인증해야 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